

# 식품과학연구소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
**제1조(명칭)** 본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부설 식품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연구소는 식품과학분야를 연구하여 학교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치)**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천연물 소재 개발
2. 기능성 물질 대량생산 표준화 기술 및 건강 제품 생산
3. 발효 기능성 식품 개발 및 공정개선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**제5조(소장)**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.

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 
<개정 2013.7.1.>

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6조(사무직원과 조교)** ① 연구소에 사무직원과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7조** 삭제 <2013.7.1.>

**제8조** 삭제 <2013.7.1.>

**제9조** 삭제 <2013.7.1.>

**제10조(예산 및 회계)** 연구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하고 산학협력단 예산에 포함시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11조** 삭제 <2013.7.1.>

**제12조** 삭제 <2013.7.1.>

**제13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